2015.4.29 재보궐선거 선거사무 인권영향평가표

(　　)동 위원회

구 분	평 가 항 목	평가결과	비고
권리침해	1. 투표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투표 안내는 충분히 홍보되었는가 ?	❑ 홍 보 ❑ 미홍보	
	2. 선거사무 추진으로 인해 유권자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지 ?	❑ 없 음 ❑ 있 음	
	3. 선거벽보 첩부시 주민의 정보취득 권리를 박탈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한 장소인가 ?	❑ 검 토 ❑ 미검토	
	4. 선거사무 추진시 장애인, 여성,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충분히 고려한 방안은 검토되었는가 ?	❑ 검 토 ❑ 미검토	
	5. 선거공보, 투표안내문, 거소투표신고안내문 등 발송시 대상자가 제외되어 참정권을 침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?	❑ 없 음 ❑ 있 음	
	6. 선거사무 추진시 인권을 고려한 사무를 진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확보되었는가 ?	❑ 확 보 ❑ 미확보	
구제수단	1. 주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구제수단이 있는가 ?	❑ 있 음 ❑ 없 음	
	2. 구제수단이 거주민의 권리침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가 ?	❑ 적 정 ❑ 부적정	
주민참여	1. 투·개표사무원, 참관인 등 위촉시 주민참여가 자유로운가 ?	❑ 적 정 ❑ 부적정	
	2. 주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참여율 제고방안 마련되었는가 ?	❑ 확 보 ❑ 미확보	
안 전	1. 투·개표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마련되었는가 ?	❑ 수 립 ❑ 미수립	
	2. 투·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었는가 ?	❑ 수 립 ❑ 미수립	
기 타	1. 선거사무 교육시 투·개표사무원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가 ?	❑ 실 시 ❑ 미실시	
	2. 투·개표소의 근무환경, 근로시간 등이 투·개표사무원, 참관인 등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였는가 ?	❑ 적 정 ❑ 부적정	

2015년 4월　　일

점검자 : 소속)　　직)　　성명)　　(인)

확인자 : 소속)　　직)　　성명)　　(인)